

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

〈편집자주〉

Q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DIGITAL VIDEO RECORDER 제품입니다.

기존에 인증 받은 제품인데, 단지 메인보드만 변경된다면 모든 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? 아니면, 서류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A 문의하신 "안전인증 받은 DIGITAL VIDEO RECORDER"의 메인보드가 변경될 경우, 동 메인보드의 변경 사항이,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일 경우에는 파생모델 등록만으로 제조 판매가 가능하나, 동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
Q NEP 인증신청을 준비중인 업체입니다. 신청서 양식을 보니 공장등록번호 기재란이 있는데, 본 질의자의 업체는 소기업으로 공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내(80평)이므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인증신청 업체의 공장등록은 필수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.

A 위 경우의 공장등록여부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. 따라서 NEP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자료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NEP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며, 작성 후 기술표준원 민원실로 등기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.

▶ 문의 :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박정우 연구관(02-509-7285)

Q 전자식안정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KS만으로도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표준원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며 계속하여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안전인증이 취소 되었어도 KS만으로도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?

A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KS인증을 받은 전자식안정기와,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전자식안정기가 있는 경우, 안전인증을 받은 전자식안정기가 인증이 취소되면 동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어도, KS인증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KS인증표시를 하여 제조 판매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